

연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내규

제정일: 2011.10.05

개정일: 2023.06.29

제1장 입학전형

제1조 (입학전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통하여 일반전형으로 입학 할 수 있다.

제2조 (심사기준)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서류심사의 배점은 대학 성적 50점, 학업계획서 100점, 전공적성 50점을 합하여 200점 만점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서류심사의 배점은 대학성적 30점, 대학원성적 20점, 학업계획서 100점, 전공적성 50점을 합하여 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구술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 40점,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0점, 전공에 대한 적성 30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단,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학생은 제외)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입학전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장 교육과정

제3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약과학 분야, 임상약과학 분야, 보건사회약학 분야 등에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제4조 (공통필수) 공통필수과목은 연구윤리 및 연구방법론, 논문연구, 대학원 공통세미나, 전공실습으로 구성되며, 모든 대학원생은 이들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은 논문연구1,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논문연구2를 이수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실습1,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공실습2를 이수한다.

③ 석사학위과정은 공통세미나 과목을 2학기,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학기를 이수한다. 본 공통세미나 조항은 2015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제5조(졸업요건 중 공개발표)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내용을 공통세미나를 통해 발표해야 한다.

제6조 (졸업요건 중 논문요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본심사 전까지 다음의 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2014년 이전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입학생

1. 제1저자로서 논문을 국외발행 국제학술지 (SCI, SCIE, SSCI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② 2015년 이후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입학생

1. 제1저자로서 논문을 국제 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2편 게재하여야 한다.
2. 학문 분류 상 상위 10% 이내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
3. 2편의 논문 중 한 편은 학문 분류 상 상위 50% 논문이어야 한다.
4. 학생 2명 이상이 공동 제1저자에 포함된 경우, 논문 편수를 $1/(\text{학생수}-1)$ 로 인정한다.
5. 제1저자 논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신저자 및 학생의 소속에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2016년 이후 석사학위과정 입학생

1. 제1저자로서 논문을 국제 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1편 게재하거나,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1편 이상을 주저자로 발표해야 한다.
2. 국내외학술대회라 함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원칙으로 한다.

④ 2021년 이후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입학생

1.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제1저자로 국제학술지 (SCI, SCIE, SSCI, A&HCI)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JCR 학문분류상 IF (impact factor) 상위 20% 이내에 1편 이상, 또는 상위 50% 이내에 2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2. 학생 2명 이상이 공동 제1저자에 포함된 경우, 논문 편수를 $1/(\text{학생수}-1)$ 로 인정한다.
3. 제1저자 논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신저자 및 학생의 소속에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자격시험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

제7조 (응시자격)

① 종합시험

1. 석사학위과정: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5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
3. 박사학위과정: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
4. 통합과정중단신청자: 석사학위과정에 준하여 자격을 인정하며, 중단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응시한 종합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8조 (응시절차)

-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자격승인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 ② 영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규 TOEFL, TOEIC, TEPS, IELTS 점수 확인서를 학과에 제출하거나, 기관 TOEFL의 응시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응시료) 종합시험과 영어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험일자)

- ① 종합시험: 매년 1월과 7월 초에 각 1회 실시한다.
- ② 외국어시험: 필요시 대학원 전기 및 후기 입학전형 시 실시하는 기관 TOEFL에 응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험방법) 자격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종합시험 과목:
 1. 2015년 이전 입학생: 석사학위과정은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 과목 중 2과목,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해당 학위과정 중 기수강한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 과목 중 3과목에 응시해야 한다.
 2. 2016년 이후 입학생: 석사학위과정은 기 수강한 약학대학 전임교원이 개설하고 50% 이상 강의한 과목 중 2과목,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해당 학위과정 중 기 수강한 약학대학 전임교원이 개설하고 50% 이상 강의한 과목 중 3과목에 응시해야 한다.
- ② 외국어시험: 영어시험은 TOEFL, TOEIC, TEPS, IELTS로 대신한다.

제12조 (출제범위)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종합시험
 1.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2.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종합시험: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능력을 시험한다. 다만, 개별 응시자의 전공영역을 감안하여 타 학과의 과목을 시험할 수 있다.
- ② 외국어시험
 1. 영어 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한다.
 2. <삭제>

제13조 (합격인정점수) 자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종합시험: 종합시험 과목별로 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 ② 외국어시험
 1. 합격인정 점수는 석사과정 학생은 기관TOEFL 480점, TOEFL(IBT) 55점, TEPS 480점, new TEPS 257점, TOEIC 570점, IELTS 5 이상,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은 기관TOEFL 520점, TOEFL(IBT) 68점, TEPS 580점, new TEPS 315점, TOEIC 670점, IELTS 6 이상으로 한다. 외국어시험 점수의 유효기간은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유효한 점수를 제출하여 합격한 경우 졸업시까지 인정한다. 다만, 입학전형시 학과에서 요구하는 점수 이상을 제출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입학전형시 외국어 성적을 제출한 학생은 입학후 1개월 이내에 성적 원본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어시험을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영어) 대체 강좌

이수로 대신할 수 있다.

3. 학문 분류상 상위 50% 이내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 3편이상 게재한 경우, 영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재시험) 자격시험에서 재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종합시험 응시과목 중 불합격 과목이 있는 자는 다음 학기에 그 과목을 재 응시하여야 한다.
- ②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 할 수 있다.

제15조 (학위과정 변경자의 성적 인정) 자격시험 합격자가 학위과정 변경시 그 인정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석·박사통합과정 중단자의 성적 인정

1. 종합시험: 합격 인정

2. 영어시험: 합격 인정

②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학위과정 변경자의 성적 인정

1. 종합시험: 합격 불인정

2. 영어시험: 기 제출한 성적이 통합과정 합격인정 점수를 만족할 경우에만 합격 인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제정내규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제3항)는 2016년 3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0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1항)는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0)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의 제5조는 2019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의 제6조 제2항 제2호는 2020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의 제6조 제2항 제4, 5호,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2항 제1, 3호는 2019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졸업요건 특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2월 석사학위수여 예정자는 제6조 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제4항)은 2021년 1학기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 ⑧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 제3항, 제8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목,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1목)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2조 제2항 제2목 삭제)은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 ⑩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3조 제2항 제2목)은 202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⑪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6조 제4항 제2목, 제7조 제1항 제4목)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5조 신설)은 모든 학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